

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3. 6. 20.>

국가보훈등록증(제8조의7제1항 관련)

1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

(앞면)	
 국가보훈등록증	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)	(성명) (주민등록번호) (대상 구분) 보훈번호: (주소) (경합 등록사항)
 (발행연월일)	국가보훈부장관 직인
(뒷면)	
 국가보훈부	
▶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	
• 무료: 고궁·능원, 국공립 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 • 감면: 국공립 공연장(대관 공연은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QR 세부내용 QR 참조
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 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 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	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㎡]	

2.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

(앞면)



국가보훈등록증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
(주민등록번호)

(대상 구분)

보훈번호:

(주소)

(경합 등록사항)



(발행연월일)

국가보훈부장관

직인

(뒷면)



국가보훈부

- 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- 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- 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

3.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한다.

나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.

- 1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4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5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

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

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다.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,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.

라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.